

1. 개정 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대상을 정하는 한편,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 등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정비(안 제43조제2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단체 구성원이 사용할 대회관련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에 종료된 국제행사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나.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79조의2제1항)

소액물품 면세 등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수입 향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뺀 가격으로 하되, 운송 관련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다.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환급되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대상 구체화(안 제58조의2 신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은 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도록 함.

라.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안 제69조의3)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조항을 삭제함.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안 제39조제4항 별표2)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및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에게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의이”를 “등의”로 한다.

제2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물품가격”을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을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으로 한다.

제48조의3제4항 중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을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

품을 말한다.

제69조의3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물품가격”을 “물품가격(제45조제2항제1호와 같다)”
으로 한다.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를 “영 제259
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1의 연번 174의 번호의 소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19

별표 1의 연번 175의 번호의 소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1,
69

별표 2 제2호(11) 중 “헤모글로빈뇨증 및”을 “헤모글로빈뇨증,”으로, “요
독증후군”을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
환”으로 하고, 같은 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 가격의 결정) ①·② (생략)	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 가격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 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을 말한다.	③----- --제27조제3항----- ----- ----- ----- -----.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 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사) ①·② (생략)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 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1조제7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일 이전에 제출한 법 제37 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하였고, 연장 신청일 현재 거래 사실 등의이 변동이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u>등의</u> ----- -----.

1. ~ 3. (생 략)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70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준수 여부

3. 그 밖에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덤핑방지조치대상 물품의 공급자·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84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 실적

2. 약속업체의 약속 준수여부

3. 그 밖에 상계조치의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생 략)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생 략)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

1.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 단체

2. 당해 상계조치대상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그 단체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 국제패럴림픽위원회 · 국제경기연맹 · 국제장애인경기연맹 · 각국 올림픽위원회 · 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 · 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 · 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삭 제>

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월드컵 축구대회 중 2017년에 개최되는 20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 각국 축구협회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

<삭 제>

<삭 제>

· 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6.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해당 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삭 제>

물품

7. 8. 삭 제

<신 설>

③ ~ ⑪ (생략)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생략)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

9.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
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
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
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
단체 소속 대원·지도자·운영
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
원회(이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
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
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
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

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생략)
<신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
물품)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
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
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
정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으
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
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
격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
물품) ①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②・③ (생략)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69조의3(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 법 제196조제1항에

-----별갑(鰐甲)-----호박(琥珀)-----

②・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갑(鰐甲)--호박(琥珀)-----

<삭 제>

<u>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5천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한다.</u>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u>물품가격</u>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 ----- ----- ----- --- <u>물품가격(제45조제2항제1호와 같다)</u>-----.
② (생략) 제79조의3(준수도 측정·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준수도 측정·평가 결과 활용)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 ----- -----. 1. ~ 6. (현행과 같음)